

투자위험등급 :
3등급
[중간 위험]

신영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신영마라톤2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영마라톤2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신영마라톤2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2. 집합투자업자 명칭 신영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syfund.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2015년 7월 1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5년 8월 31일
6. 모집(매출)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 좌)
[모집(매출) 총액]
7. 모집(매출) 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 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매출) 총액].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www.kofia.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 www.syfund.co.kr
각 판매회사 본·지점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
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 투자 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의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MMF펀드(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 가능합니다.
9. 폐쇄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동성 제공을 위해 상장이 되더라도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환금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11. 외국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따라 일부 기재항목은 기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기재가 생략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대신 기재될 수 있으니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2. 후취 판매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 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 13.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목 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마. 특수형태 표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가. 투자운용인력
 - 나. 투자운용인력 변경 내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나. 종류형 구조
 - 다. 모자형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가. 투자대상
 - 나. 투자제한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나.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가. 일반위험
- 나. 특수위험
- 다. 기타 투자위험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11. 매입, 환매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가. 매입
 - 나. 환매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 배분
 - 나. 과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 가. 요약재무정보
 - 나. 대차대조표
 - 다. 손익계산서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 기준)
 -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 개요
 - 나. 주요 업무
 -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라. 운용자산 규모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 가. 회사 개요
 - 나. 주요 업무
-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가. 회사 개요
 - 나. 주요 업무
-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가. 회사 개요
 - 나. 주요 업무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수익자총회 등
 - 나. 잔여재산분배
 -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라. 손해배상책임
 - 마. 재판관할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가. 의무 해지
 - 나. 임의 해지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가. 정기보고서
 - 나. 수시공시
-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제 6 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명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신영 마라톤 2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B6249
A	B6250
Ae	B6251
C	B6280
Ce	B6281
Cw	B6282
C-P	B6283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혼합채권형)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마. 특수형태 표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형태의 투자신탁)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 조 좌

- (주 1) 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 (주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 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될 예정입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가.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 1)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syfund.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2) 모집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명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신영 마라톤 2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B6249
A	B6250
Ae	B6251
C	B6280
Ce	B6281
Cw	B6282
C-P	B6283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15년 8월 31일	투자신탁 최초설정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해산)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5 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신영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6 (대표전화 : 02-6711-7500, 홈페이지 : www.syfund.co.kr)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투자운용인력

(기준일: 2015.7.1.)

◆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규모	
허남권	1963	자산운용 부문장	115 개	79,468 억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신영증권 영업 및 상품운용 -신영자산운용 자산운용부문장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1개, 46억]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자산운용본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투자 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자입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집합투자지구 수	운용중인 집합투자지구 규모	
김창섭	1968	채권운용 본부장	45 개	17,494 억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하나UBS자산운용(11년) -신영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
이병창	1972	마라톤가치 본부장	14 개	11,599 억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대신경제연구소 리서치 -튜브투자자문 MP운용 -한가람투자자문 일임상품운용 -KTB투자증권 고유상품운용 -현 신영자산운용 마라톤가치본부장
윤하국	1983	주식운용역	12 개	1,651 억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현 신영자산운용 마라톤가치본부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지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지구: 이병창 6개 2,857억]

- 주1)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지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 운용인력>

신영마라톤증권모투자신탁F1호(주식)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집합투자지구 수	운용중인 집합투자지구 규모	
책임	허남권	1963	자산운용 부문장	115 개	79,468 억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신영증권 영업 및 상품운용 -신영자산운용 자산운용부문장
부책임	이병창	1972	마라톤가치 본부장	14 개	11,599 억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대신경제연구소 리서치 -튜브투자자문 MP운용 -한가람투자자문 일임상품운용 -KTB투자증권 고유상품운용 -현 신영자산운용 마라톤가치본부장
부책임	윤하국	1983	주식운용역	12 개	1,651 억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현 신영자산운용 마라톤가치본부

신영밸류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집합투자지구 수	운용중인 집합투자지구 규모	
책임	허남권	1963	자산운용 부문장	115 개	79,468 억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신영증권 영업 및 상품운용 -신영자산운용 자산운용부문장
부책임	김창섭	1968	채권운용 본부장	45 개	17,494 억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하나UBS자산운용(11년)

						신영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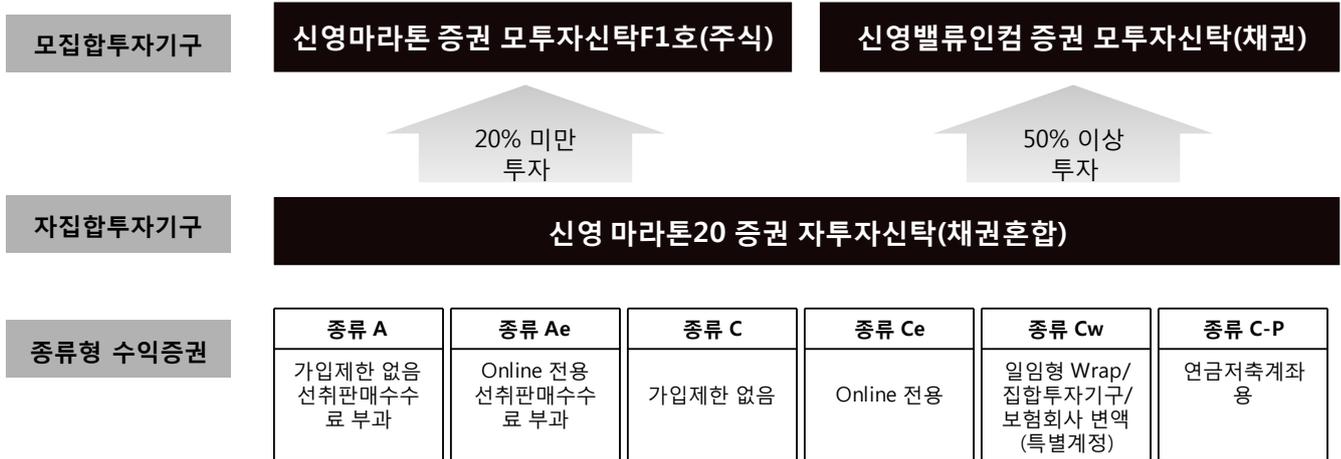
나. 투자운용인력 변경 내역

운용역	운용기간
해당 사항 없음	

(주) 최근 3년간의 투자운용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제 231 조에 의거한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며, 종류의 구분에 관계없이 운용은 통합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종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가입자격
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Ae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해 가입한 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C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Ce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해 가입한 자에 한하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집합투자기구 또는 보험회사의 변액보험(특별계정)
C-P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주 1) 보수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2 부의 내용 중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 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신영 마라톤 증권 모투자신탁 F1 호(주식)	신영 밸류인컴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자투자신탁		
신영 마라톤 2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신탁재산의 20% 미만 투자	신탁재산의 50% 이상 투자

• 모투자신탁의 구조

모투자신탁	자투자신탁
신영마라톤 증권 모투자신탁 F1호(주식)	신영마라톤 증권 자투자신탁 F1호 (주식)
	신영마라톤분할적립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혼합)
	신영마라톤분할매수 증권 자투자신탁 2호 (주식혼합)
	신영마라톤40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혼합)
	신영마라톤20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혼합)
	신영마라톤60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혼합)
	신영마라톤 소득공제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신영We'll Rich100_6090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채권혼합)
	신영We'll Rich100_4050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주식혼합)
신영 밸류인컴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신영We'll Rich100_2030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주식)
	신영마라톤40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혼합)
	신영마라톤20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혼합)
	신영마라톤60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혼합)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3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신영밸류우선주3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신영We'll Rich100_6090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채권혼합)
신영We'll Rich100_4050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주식혼합)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신영 마라톤 증권 모투자신탁 F1 호(주식)	주요투자대상	-주식 70% 이상 -채권 및 어음 40% 이하
	투자목적	주로 주식에 투자하여 주가가격상승에 따른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함
	주요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주식에 주로 투자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하여 제가치에 도달할 때까지 보유하는 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원본을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
신영 밸류인컴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주요투자대상	채권 70% 이상
	투자목적	주로 채권에 투자하여 채권의 이자수익 및 가격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함
	주요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국채 및 통안채 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 -듀레이션은 중립적으로 운용하며 상대가치 분석을 통해 초과수익을 추구함 -이자율변동 및 신용위험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신영 밸류인컴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신영 마라톤 증권 모투자신탁 F1 호(주

신영자산운용

식)에 투자신탁자산의 20% 미만을,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신영 밸류인컴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에 투자신탁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혼합채권형)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 비율	주요 내용
1. 주식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20%미만	신영 마라톤 증권 모투자신탁 F1 호(주식)
2. 채권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50%이상	신영 밸류인컴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3.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환매조건부매수	10%이하	<p>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4.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 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의 예치 및 환매조건부매수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투자대상 1부터 3까지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 투자대상 1부터 3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

1. 신영 마라톤 증권 모투자신탁 F1 호(주식)

투자대상의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1. 주식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70%이상	법 제 4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

상장주식)		한다)
2. 채권	40%이하	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3. 어음	40%이하	법 제 4 조 제 3 항의 기업어음증권(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법 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로서 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4.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5. 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6. 주식및채권관련 장내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이하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7. 집합투자증권 등	5%이하	법 제 1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 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30%이하	법 제 23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8.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이하	
9. 환매조건부매도	채권총액의 100 분의 50 이하	
10. 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1. 신탁업자 고유 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2.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환매조건부매수	<p>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 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투자대상 1부터 4까지의 규정은 그 투자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 투자대상 1부터 4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②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 투자대상 5부터 10까지, 하기 신영 마라톤 증권 모투자신탁 F1호(주식) 투자제한 2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하기 신영 마라톤 증권 모투자신탁 F1호(주식) 투자제한 2 및 3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신영 밸류인컴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투자대상의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1. 채권	70%이상	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2. 어음	40%이하	법 제 4 조 제 3 항의 기업어음증권(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법 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로서 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3.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 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5.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이하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 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 집합투자증권 등	40%이하	법 제 1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 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30%이하	법 제 23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7.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이하	
8. 환매조건부매도	채권총액의 100 분의 50 이하	
9. 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0. 신탁업자 고유 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1.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환매조건부매수	<p>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 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투자대상 1부터 3까지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 투자대상 1부터 3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 투자대상 4부터 9까지, 하기 신영 밸류인컴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투자제한 2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③ 하기 신영 밸류인컴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투자제한 2 및 3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주 1)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 제외
1. 이해관계인 투자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 제한]		
1. 신영 마라톤 증권 모투자신탁 F1 호(주식)		
구분	내용	적용 제외
1.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나.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상기 100%까지 투자가능한 자산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고 한다)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 지분증권의 종가의 총액을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종가의 총	최초설정일 로부터 1개월간

	<p>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월간 적용한다.</p>	
3. 주식및채권관련 파생상품 투자제한	<p>①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4.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	<p>②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5.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6. 후순위채권 투자	<p>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p> <p>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p>	

2. 신영밸류인컴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구분	내용	적용 제외
1. 이해관계인 투자제한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p> <p>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p> <p>다.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p>	
2. 동일종목 투자	<p>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p> <p>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p>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p> <p>나.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상기 100%까지 투자가 가능한 자산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p>	<p>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p>

	<p>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고 한다)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에 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 지분증권의 증가의 총액을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증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월간 적용한다.</p>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3. 파생상품 투자 제한</p>	<p>파생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p>
<p>4. 집합투자증권 투자제한</p>	<p>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5. 후순위채권 투자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	--

(주 1)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20% 미만을,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혼합채권형)로 모투자신탁의 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2) 비교지수(벤치마크) : **KOSPI 18% + KIS국공채지수(1~2년) 72% + Call 10%**

주1)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요 투자대상과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될 경우 변경등록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됩니다.

주2) 비교지수

- KOSPI지수는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식으로 산출하여 주가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KIS국공채지수(1~2년)는 KIS채권평가사의 KIS종합채권지수에서 1~2년 구간의 국공채를 대상으로 customize한 지수입니다.
- Call은 금융기관 상호간의 단기자금대차인 콜에 대한 이자율입니다.

주3) 선정사유: KOSPI지수는 한국증시의 현황을 가장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로서 본 집합투자기구의 포트폴리오와 비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와 같은 복합 지수를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한국채권시장의 대표성을 전반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KIS종합지수에서 1~2년 구간 국공채를 중심으로 customize한 KIS국공채지수(1~2년)와 유동이 활발하고 단기자금시장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Call금리를 선택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1. 신영 마라톤 증권 모투자신탁 F1 호(주식)

(1)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재산의 7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수익 및 자본차익을 추구합니다.

- ① 주식투자: 저평가된 종목 위주로 편입비율 70%이상 유지
 -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하여 제가치에 도달할 때까지 보유하는 전략
 - 시장 흐름을 추종하는 전략이 아닌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
 - 종목매도는 적정가치에 도달하였거나, 보다 저평가된 종목을 편입하기 위한 경우, 기업에 대한 전망을 바꿀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경우로 한정하여 빈번한 매매를 지양
- ② 포트폴리오 구성
 - 유니버스 구성: 당사의 재무적/정성적 기준에 따라 선별된 유니버스 내 종목군 중에서 투자 대상종목을 선정합니다. 분기 1회 신규종목 추가 및 편입종목 삭제 등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종목 가치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경우 정기적 운용 회의를 통해 유니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자산배분: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근거한 자의적 자산배분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으로의 교체매매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종목 발굴을 통한 주식선택에 집중합니다.
 - 종목별 비중: 분산투자를 지향하되 시가총액 비중, 상대적 투자 매력도, 거래 유동성을 감안하여 비중 결정

(2) 위험관리 전략

- ① 균등투자 원칙을 토대로 분산투자하고, 시장에측을 통한 편입비 조절을 하지 않음으로써 과도한 매매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트폴리오 관리
- ②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회사 전체의 위험 정책 관리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설정
- ③ 리스크관리본부에서 자산별, 펀드별 거래 한도 및 핵심 위험요인을 측정, 관리

(3) 비교지수(벤치마크) : KOSPI 90% + CD 91 일물 10%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 KOSPI 는 한국증시의 현황을 가장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로서 본 집합투자기구의 포트폴리오와 비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와 같은 복합 지수를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으며, CD 91 일물 수익률은 현금성 자산과의 비교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단,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참고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변경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2. 신영밸류인컴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1)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이 투자신탁은 우량 채권 및 어음 등에 70% 이상 투자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증권집합 투자기구(채권형)입니다.

이 투자신탁의 기본운용전략은 국채 및 통안채 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회사채 및 어음에 투자하는 경우 신용평가등급, 부채비율, 3년간 영업현금흐름, 금융비용부담률, 자기자본 이익률, 유보율 분석을 통해 투자가능 목록을 작성합니다. 운용역은 투자가능 목록을 기반으로 하여 자산을 선별/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콜, 정기에금 등 기타 유동성자산은 영업운송자본 비율, 지급여력비율, 실질자기자본비율로 평가된 투자 가능 목록 안에서 투자하여 효율적인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포트폴리오 운용시 듀레이션(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가중평균만기로서 채권가격의 이자율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조정 및 수익률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산전체의 가중평균 잔존만기 일(듀레이션)은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시장전망을 통한 과도한 듀레이션 조정은 지양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대가치 분석에 따라 저평가된 채권만기, 채권종목 비중을 확대하고 고평가된 부분은 축소하여 추가 수익을 추구합니다.

채권모펀드 포트폴리오 구성안



- 펀드 구성(채권모펀드 순자산 대비)
 - ⇒ 국공채, 통안채 50% +
 - 은행채, 회사채(A0이상), CP, 예금 등 50%

* 상기 포트폴리오 및 듀레이션 등은 실제 운용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위험관리 전략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회사 전체의 위험 정책을 관리하고 있으며 투자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리스크

관리본부에서 자산별, 펀드별 거래한도 및 투자한도를 점검하며, 핵심 위험요인을 측정, 관리합니다. 정기적으로 운용부서 및 운용본부장에게 포트폴리오 위험, 기준지수 대비 성과, 요인분석 및 추적오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 시 대표이사 이하 관계자들이 사후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결정합니다.

(3) 비교지수: KIS 국공채지수(1~2년) 90% + Call 10%

- 주 1)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요 투자대상과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될 경우 변경등록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됩니다.
- 주 2) 비교지수: KIS 국공채지수(1~2년)는 KIS 채권평가사의 KIS 종합채권지수에서 1~2년 구간의 국공채를 대상으로 customize 한 지수입니다. Call은 금융기관 상호간의 단기자금대차인 콜에 대한 이자율입니다.
- 주 3) 선정사유: 비교지수 요인으로는 한국채권시장의 대표성을 전반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KIS 종합지수에서 1~2년 구간 국공채를 중심으로 customize 한 KIS 국공채지수(1~2년)와 유통이 활발하고 단기자금시장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Call 금리를 선택하였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시장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신영 마라톤 증권 모투자신탁 F1 호(주식)에 신탁재산의 20% 미만,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신영 밸류인컴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에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여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합니다. 모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한 주식 및 채권 등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반대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투자신탁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식가격 변동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식에 20% 미만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시장위험</p>	<p>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p>신용위험</p>	<p>당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p>
<p>파생상품 레버리지위험</p>	<p>주식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효과(지렛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p>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p>거래상대방 위험</p>	<p>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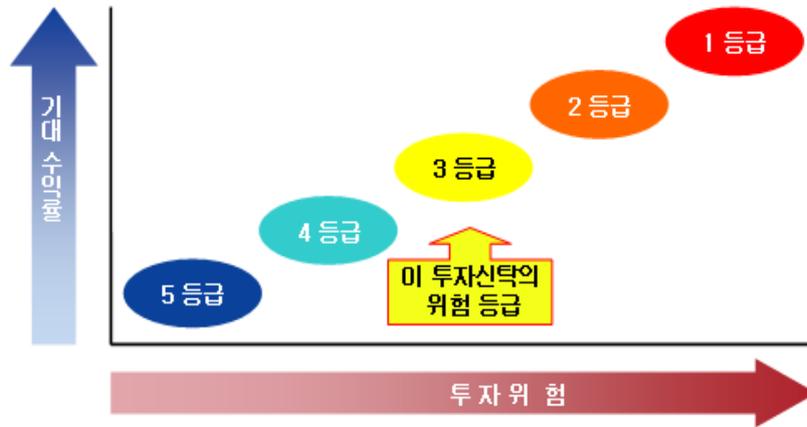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p>유동성 위험</p>	<p>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환매연기위험</p>	<p>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신고서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나. 환매'의 '(8)수익증권의 환매연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예상순자산가치 변동위험· 이중가격위험</p>	<p>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금액은 환매일의 출금액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p>
<p>신탁해지 위험</p>	<p>투자신탁의 경우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p>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손실가능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20% 미만을,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하며 중간 수준의 위험을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며, **5개의 투자위험등**

급 중 위험도가 중간 정도인 3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신영자산운용(주)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예시)>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집합투자규약 상 주식 편입 비율 60% 이상) 구조화된 파생상품투자신탁(원금보존추구형 포함)
2등급	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편입비율이 규약상 30% 초과 60% 이하인 증권투자신탁 후순위채권, 투기등급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고수익고위험 증권투자신탁
3등급	중간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편입비율이 집합투자규약상 30% 이하인 증권투자신탁
4등급	낮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등급 이상의 회사채, 국공채 등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낮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주 1) 상기 투자위험등급 분류 기준은 신영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으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 2) 일부 장기투자목적의 채권혼합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거치식보다는 적립식으로 투자되는 특성이 있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에 주력해 운용하는 관계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성격에 따라 상기 기준과 상이한 투자위험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일에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매입자격

이 집합투자기구의 매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매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가입자격
종류 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 Ae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해 가입한 자에 한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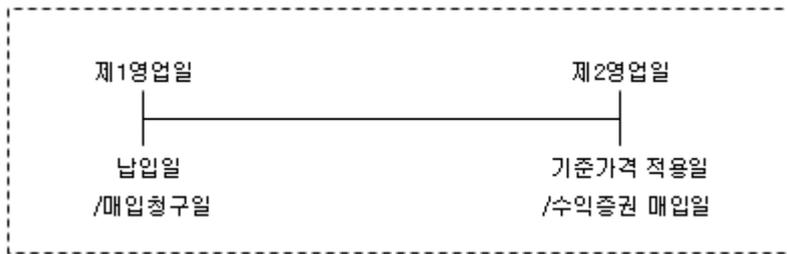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 C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e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해 가입한 자에 한하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집합투자기구 또는 보험회사의 변액보험(특별계정)
종류 C-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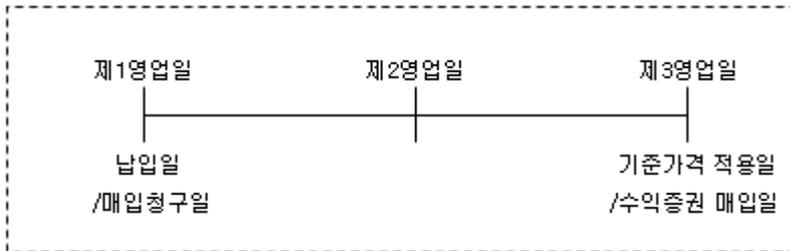
① 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제 2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② 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③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4)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금전 등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전 등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5)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집합투자기구의 매입청구 취소(정정)는 매입청구를 한 당일에 한하여 판매회사 영업점의 영업시간 중에 가능합니다.

(6) 선취판매수수료

이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A 수익증권 또는 종류 Ae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종류 A 수익증권 또는 종류 Ae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시점에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종류 A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 시 적용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의 0.6% 이내로 이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고, 종류 Ae 수익증권의 선취판매 수수료는 납입금액의 0.3% 이내로 이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합니다. 판매회사가 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 영업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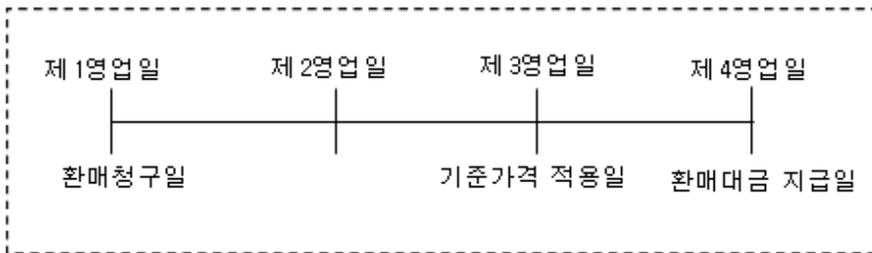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에서 이 투자신탁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도 환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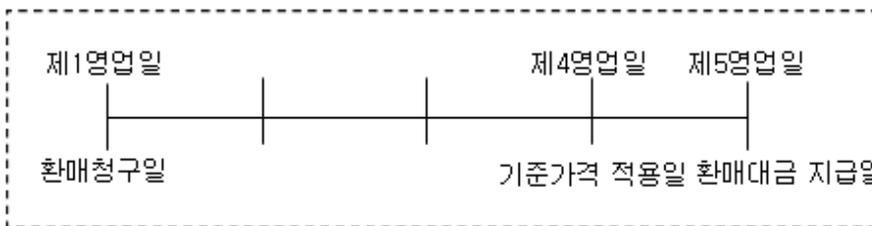
① 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 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② 오후 5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5 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매입 및 환매관련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3)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소유 중인 금전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목적으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편입됩니다.

1. 종류 A 수익증권 : 90 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2. 종류 Ae 수익증권 : 90 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3. 종류 C 수익증권 : 90 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4. 종류 Ce 수익증권 : 90 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5. 종류 Cw 형 수익증권 : 90 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6. 종류 C-P 형 수익증권 : 환매 수수료 없음

(5)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집합투자기구의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환매청구를 한 당일에 한하여 판매회사 영업점의 영업시간중에 가능합니다.

(6)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 (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 등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① 내지 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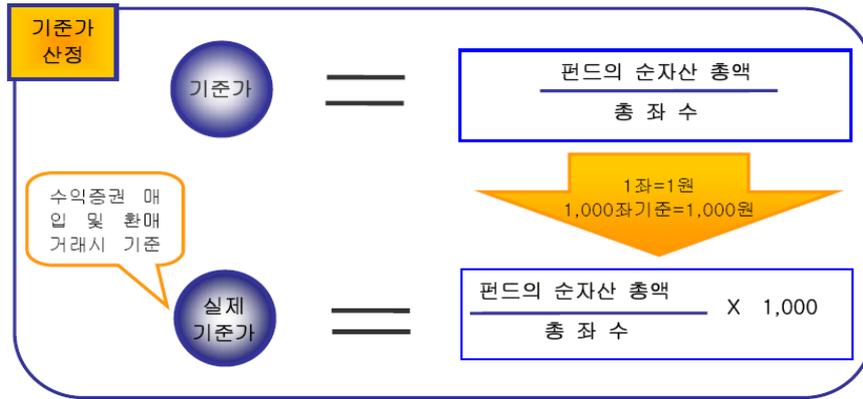
(9)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 수익증권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 간 판매 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 수익증권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포함)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 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 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syfund.co.kr),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게시합니다.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 ③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3)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	------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③-①장외파생상품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평가.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의거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준하여 평가)
④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⑤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⑥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종류 A	종류 Ae	종류 C	종류 Ce	종류 Cw	종류 C-P	
가입자격	제한 없음	온라인 가입자	제한 없음	온라인 가입자	일임형 Wrap/집합투자기구/보험회사 변액(특별계정)	연금지축 계좌	부과시기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6% 이내	납입금액의 0.3% 이내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매입시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없음	환매시

(주 1) 선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 2)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되오니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두자신탁에 투자하는 모든 자투자신탁의 수수료 현황

펀드명	수수료(%)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전환
신영마라톤증권자투자신탁F1호(주식) A형	납입금액의 1%	없음	없음	없음
신영마라톤증권자투자신탁F1호(주식) C1형	없음		90일 미만	
신영마라톤증권자투자신탁F1호(주식) C2형			환매시 이익금의	

신영마라톤증권자투자신탁F1호(주식) C3형			70%	
신영마라톤증권자투자신탁F1호(주식) C4형				
신영마라톤증권자투자신탁F1호(주식) Ce형				
신영마라톤증권자투자신탁F1호(주식) S형		3년 미만 환매시 환 매금액의 0.15%이내		
신영마라톤분할적립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A형	납입금액의 1% 이내	없음		
신영마라톤분할적립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C1형	없음			
신영마라톤분할적립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C2형				
신영마라톤분할적립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C3형				
신영마라톤분할적립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C4형				
신영마라톤분할매수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혼합) A형	납입금액의 1% 이내			
신영마라톤분할매수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혼합) C1형	없음			
신영마라톤분할매수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혼합) C2형				
신영마라톤분할매수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혼합) C3형				
신영마라톤분할매수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혼합) C4형				
신영마라톤분할매수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혼합) Cf형				
신영마라톤분할매수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혼합) Cw형				
신영마라톤분할매수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혼합) Ce형				
신영마라톤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A형	납입금액의 0.6% 이내			
신영마라톤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Ae형	납입금액의 0.3% 이내			
신영마라톤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C형	없음			
신영마라톤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Ce형				
신영마라톤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Cw형				
신영마라톤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C-P형				
신영마라톤2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A형			납입금액의 0.6% 이내	
신영마라톤2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Ae형	납입금액의 0.3% 이내			
신영마라톤2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C형	없음			
신영마라톤2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Ce형				
신영마라톤2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Cw형				
신영마라톤2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C-P형				
신영마라톤6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A형		납입금액의 1% 이내		
신영마라톤6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Ae형	납입금액의 0.5% 이내			
신영마라톤6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C형	없음			
신영마라톤6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Ce형				
신영마라톤6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Cw형				
신영마라톤6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C-P형				
신영마라톤6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C-P형				

신영마라톤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 C형					
신영마라톤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 Ce형					
신영마라톤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 S-T형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A형	납입금액의 1% 이내	없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Ae형	납입금액의 0.5%이내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C1형	없음				90일 이상 1년 미만: 이익금의 50%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C2형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C3형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C4형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Ce형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Ci형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Cw형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S형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Cp형		없음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A형	납입금액의 0.5% 이내	없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Ae형	납입금액의 0.25%이내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C형	없음				90일 이상 1년 미만: 이익금의 50%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Ce형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Ci형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Cw형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Cp형		1년 이상 3년 미만: 이익금의 30%			
신영We'll Rich100_609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채권혼합) A형	납입금액의 0.7%이내	없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없음	
신영We'll Rich100_609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채권혼합) Ae형	납입금액의 0.35%이내				
신영We'll Rich100_609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채권혼합) C형	없음				
신영We'll Rich100_609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채권혼합) Ce형					
신영We'll Rich100_609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채권혼합) Ci형					
신영We'll Rich100_609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채권혼합) Cp형					
신영We'll Rich100_405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 A형	납입금액의 1% 이내				
신영We'll Rich100_405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 Ae형	납입금액의 0.5% 이내				
신영We'll Rich100_405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 C1형	없음				
신영We'll Rich100_405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 Ce형					

신영We'll Rich100_20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 A형	납입금액의 1% 이내			
신영We'll Rich100_20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 Ae형	납입금액의 0.5% 이내			
신영We'll Rich100_20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 C1형	없음			
신영We'll Rich100_20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 C2형				
신영We'll Rich100_20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 C3형				
신영We'll Rich100_20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 C4형				
신영We'll Rich100_20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 Ce형				
신영밸류우선주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A형	납입금액의 1% 이내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신영밸류우선주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Cf형				180일 미만: 이익금의 30%
신영밸류우선주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Ci형				
신영밸류우선주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Cw형				
신영밸류우선주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Ce형				

주1) 자세한 사항은 각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 (연간, %)						증권거래 비용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 회사 보수	기타비용	총 보수	
A	0.3000	0.4000	0.0180	0.0120	-	0.7300	-
	합성 총 보수·비용 비율 (STER)					0.7300	
Ae	0.3000	0.2000	0.0180	0.0120	-	0.5300	-
	합성 총 보수·비용 비율 (STER)					0.5300	
C	0.3000	0.8000	0.0180	0.0120	-	1.1300	-
	합성 총 보수·비용 비율 (STER)					1.1300	
Ce	0.3000	0.4000	0.0180	0.0120	-	0.7300	-
	합성 총 보수·비용 비율 (STER)					0.7300	
Cw	0.3000	0.0000	0.0180	0.0120	-	0.3300	-
	합성 총 보수·비용 비율 (STER)					0.3300	
C-P	0.3000	0.7000	0.0180	0.0120	-	1.0300	-
	합성 총 보수·비용 비율 (STER)					1.0300	
지급시기	매3개월	매3개월	매3개월	매3개월	사유 발생시	-	사유 발생시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위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4)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 비용에 이 투자신탁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구분	1년	3년	5년	10년
종류 A	133	289	461	973
종류 Ae	83	197	322	695
종류 C	113	356	624	1,421
종류 Ce	73	230	403	918
종류 Cw	33	104	182	415
종류 C-P	103	325	569	1,296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 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2) 신탁보수는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NAV)변동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주 3) 종류 A 수익증권과 종류 C 수익증권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모두자신탁에 투자하는 모든 자투자신탁의 보수 및 비용**

(단위: 연간, %)

펀드명	보수(%)				
	운용	판매	수탁	사무	총보수
신영마라톤증권자투자신탁F1호(주식) A형	0.6500	0.9000	0.0300	0.0200	1.6000
신영마라톤증권자투자신탁F1호(주식) C1형	0.6500	1.5000	0.0300	0.0200	2.2000
신영마라톤증권자투자신탁F1호(주식) C2형	0.6500	1.3500	0.0300	0.0200	2.0500
신영마라톤증권자투자신탁F1호(주식) C3형	0.6500	1.2000	0.0300	0.0200	1.9000
신영마라톤증권자투자신탁F1호(주식) C4형	0.6500	1.0000	0.0300	0.0200	1.7000
신영마라톤증권자투자신탁F1호(주식) Ce형	0.6500	0.9800	0.0300	0.0200	1.6800
신영마라톤증권자투자신탁F1호(주식) S형	0.6500	0.3500	0.0300	0.0200	1.0500
신영마라톤분할적립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A형	0.6000	0.7000	0.0300	0.0200	1.3500
신영마라톤분할적립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C1형	0.6000	1.4000	0.0300	0.0200	2.0500
신영마라톤분할적립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C2형	0.6000	1.2500	0.0300	0.0200	1.9000
신영마라톤분할적립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C3형	0.6000	0.9900	0.0300	0.0200	1.6400
신영마라톤분할적립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C4형	0.6000	0.8900	0.0300	0.0200	1.5400
신영마라톤분할매수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혼합) A형	0.6000	0.7000	0.0300	0.0200	1.3500
신영마라톤분할매수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혼합) C1형	0.6000	1.4000	0.0300	0.0200	2.0500
신영마라톤분할매수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혼합) C2형	0.6000	1.2500	0.0300	0.0200	1.9000
신영마라톤분할매수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혼합) C3형	0.6000	0.9900	0.0300	0.0200	1.6400
신영마라톤분할매수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혼합) C4형	0.6000	0.8900	0.0300	0.0200	1.5400
신영마라톤분할매수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혼합) Cf형	0.6000	0.0300	0.0300	0.0200	0.6800
신영마라톤분할매수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혼합) Cw형	0.6000	0.0200	0.0300	0.0200	0.6700
신영마라톤분할매수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혼합) Ce형	0.6000	0.9000	0.0300	0.0200	1.5500
신영마라톤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A형	0.4000	0.5000	0.0180	0.0120	0.9300
신영마라톤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Ae형	0.4000	0.2500	0.0180	0.0120	0.6800
신영마라톤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C형	0.4000	0.9000	0.0180	0.0120	1.3300
신영마라톤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Ce형	0.4000	0.4500	0.0180	0.0120	0.8800
신영마라톤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Cw형	0.4000	0.0000	0.0180	0.0120	0.4300

신영마라톤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C-P형	0.4000	0.8000	0.0180	0.0120	1.2300
신영마라톤2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A형	0.3000	0.4000	0.0180	0.0120	0.7300
신영마라톤2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Ae형	0.3000	0.2000	0.0180	0.0120	0.5300
신영마라톤2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C형	0.3000	0.8000	0.0180	0.0120	1.1300
신영마라톤2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Ce형	0.3000	0.4000	0.0180	0.0120	0.7300
신영마라톤2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Cw형	0.3000	0.0000	0.0180	0.0120	0.3300
신영마라톤2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C-P형	0.3000	0.7000	0.0180	0.0120	1.0300
신영마라톤6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A형	0.5400	0.5000	0.1800	0.1200	1.3400
신영마라톤6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Ae형	0.5400	0.2500	0.1800	0.1200	1.0900
신영마라톤6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C형	0.5400	0.9500	0.1800	0.1200	1.7900
신영마라톤6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Ce형	0.5400	0.4800	0.1800	0.1200	1.3200
신영마라톤6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Cw형	0.5400	0.0000	0.1800	0.1200	0.8400
신영마라톤6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C-P형	0.5400	0.8500	0.1800	0.1200	1.6900
신영마라톤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 C형	0.4600	0.7000	0.0180	0.0120	1.1900
신영마라톤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 Ce형	0.4600	0.3700	0.0180	0.0120	0.8600
신영마라톤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 S-T형	0.4600	0.3500	0.0180	0.0120	0.8400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A형	0.5400	0.7000	0.0200	0.0100	1.2700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Ae형	0.5400	0.3500	0.0200	0.0100	0.9200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C1형	0.5400	1.3000	0.0200	0.0100	1.8700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C2형	0.5400	1.1000	0.0200	0.0100	1.6700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C3형	0.5400	0.9000	0.0200	0.0100	1.4700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C4형	0.5400	0.7000	0.0200	0.0100	1.2700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Ce형	0.5400	0.5000	0.0200	0.0100	1.0700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Ci형	0.5400	0.1000	0.0200	0.0100	0.6700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Cw형	0.5400	0.0000	0.0200	0.0100	0.5700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S형	0.5400	0.3000	0.0200	0.0100	0.8700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Cp형	0.5400	0.9500	0.0200	0.0100	1.5200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A형	0.4500	0.6000	0.0250	0.0050	1.0800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Ae형	0.4500	0.3000	0.0250	0.0050	0.7800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C형	0.4500	0.9000	0.0250	0.0050	1.3800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Ce형	0.4500	0.4500	0.0250	0.0050	0.9300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Ci형	0.4500	0.1000	0.0250	0.0050	0.5800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Cw형	0.4500	0.0000	0.0250	0.0050	0.4800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Cp형	0.4500	0.7000	0.0250	0.0050	1.1800
신영We'll Rich100_609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채권혼합) A형	0.4000	0.6600	0.0200	0.0100	1.0900
신영We'll Rich100_609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채권혼합) Ae형	0.4000	0.3300	0.0200	0.0100	0.7600
신영We'll Rich100_609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채권혼합) C형	0.4000	0.9000	0.0200	0.0100	1.3300
신영We'll Rich100_609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채권혼합) Ce형	0.4000	0.4500	0.0200	0.0100	0.8800
신영We'll Rich100_405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 A형	0.4500	0.7000	0.0200	0.0100	1.1800
신영We'll Rich100_405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 Ae형	0.4500	0.3500	0.0200	0.0100	0.8300

신영We'll Rich100_405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 C형	0.4500	0.1000	0.0200	0.0100	1.4800
신영We'll Rich100_405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 Ce형	0.4500	0.0500	0.0200	0.0100	0.9800
신영We'll Rich100_20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 A형	0.5000	0.8000	0.0200	0.0100	1.3300
신영We'll Rich100_20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 Ae형	0.5000	0.4000	0.0200	0.0100	0.9300
신영We'll Rich100_20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 C1형	0.5000	1.1500	0.0200	0.0100	1.6800
신영We'll Rich100_20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 C2형	0.5000	1.0500	0.0200	0.0100	1.5800
신영We'll Rich100_20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 C3형	0.5000	0.9500	0.0200	0.0100	1.4800
신영We'll Rich100_20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 C4형	0.5000	0.8500	0.0200	0.0100	1.3800
신영We'll Rich100_20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 Ce형	0.5000	0.5000	0.0200	0.0100	1.0300
신영밸류우선주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A형	0.4000	0.6500	0.0300	0.2000	1.1000
신영밸류우선주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C형	0.4000	0.9500	0.0300	0.2000	1.4000
신영밸류우선주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Cf형	0.4000	0.0300	0.0300	0.2000	0.4800
신영밸류우선주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Ci형	0.4000	0.0200	0.0300	0.2000	0.4700
신영밸류우선주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Cw형	0.4000	0.0000	0.0300	0.2000	0.4500
신영밸류우선주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Ce형	0.4000	0.8800	0.0300	0.2000	1.3300

주1) 자세한 사항은 각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신탁 관련 비용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 (2) 수익자는 (1)에 의하여 분배되는 이익금을 금전 등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3)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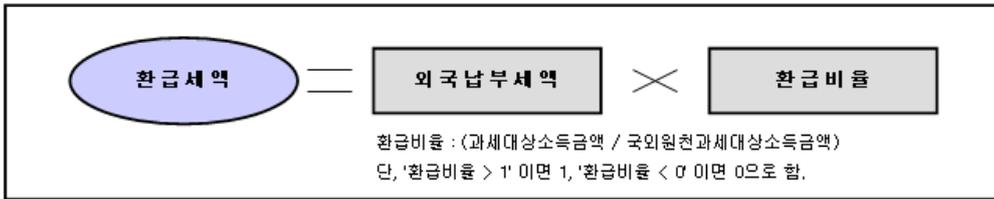
(4)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수익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가입자부담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연금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금액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 적용
분리과세 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제외)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 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출 (연금수령)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에 한함)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시 과세	연금소득으로 5.5%~3.3% 분리과세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주 1)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함.

※ 위 내용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시행됩니다.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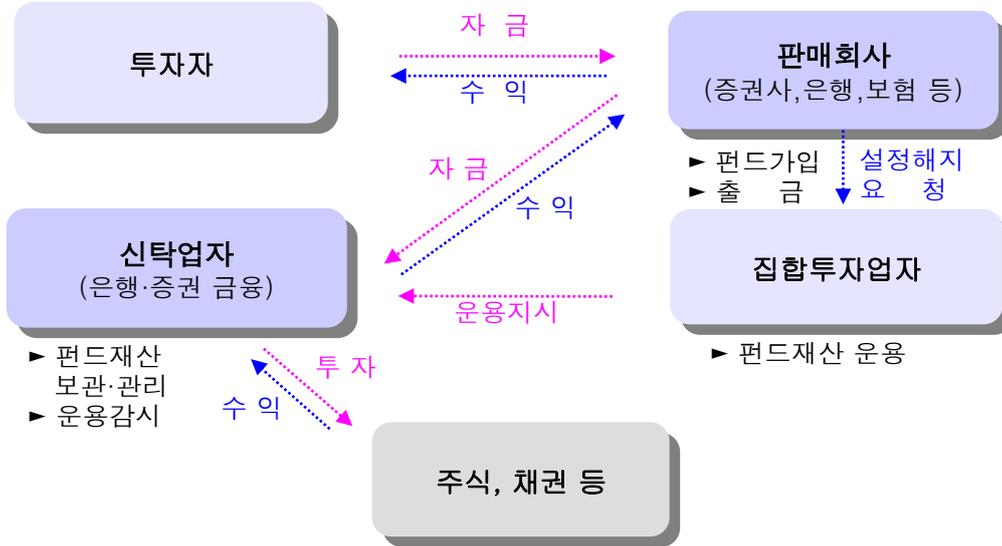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소득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신규설정되는 투자신탁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펀드의 운용구조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신영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6 (대표전화 : 02-6711-7500, 홈페이지 : www.syfund.co.kr)
회사 연혁	1996.08. 신영투자신탁운용(주) 설립 1996.08. 증권투자신탁 운용업 허가 (증업45332-235) 1997.05. 투자자문업등록 (등록번호 제44호, 증업41299-150) 1997.06. 투자일임업 허가 (증업41299-172) 1999.01. 자산운용회사 등록 (등록번호 9, 감독 7 6114-34) 2000.12. 유상증자 20억원 (자본금320억원) 2009.02. 신영자산운용(주)로 사명 변경
자본금	320억
주요주주 현황	신영증권(주) (85.9%), 코리안리재보험(주) (9.4%), 서울보증보험(주) (4.7%)

나. 주요 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

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제19기 2015.3.31	제18기 2014.3.31	계정과목	제18기 2014.4.1~ 2015.3.31	제18기 2013.4.1~ 2014.3.31
현금 및 예치금	61,580	60,609	영업수익	44,662	28,755
유가증권	35,839	19,451	영업비용	11,706	8,699
유형자산	5,565	5,706	영업이익	32,956	20,056
기타자산	16,215	14,533	영업외수익	628	675
자산총계	119,199	100,299	영업외비용	3	3
기타부채	6,202	4,632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33,540	20,728
부채총계	7,352	4,632			
자본금	32,000	32,000			
이익잉여금	79,833	63,548	법인세비용	7,654	4,554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14	119			
자본총계	111,847	95,667	당기순이익	25,885	16,174
부채와 자본총계	119,199	100,299			

라. 운용자산 규모

(2015.7.1. 현재 / 단위 : 억원 / 일임자산 제외)

구분	증 권			MMF	파생 상품	부동산	특별 자산	재간접	실물 자산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설정액	61,900	20,607	788	905	950	0	0	148	0	85,299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주)우리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 가 203 02-2002-3000
홈페이지	www.wooribank.com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금융투자상품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의무와 책임

-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위의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I.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II. 법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III. 법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IV. 법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V. 법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VI.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VI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법 제90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제248호제1항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외환펀드서비스(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70 한외빌딩 9층 02-6714-4615
홈페이지	www.kebis.co.kr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신탁약관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KIS채권평가	에프엔자산평가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 ☎ 02-399-335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 02-398-3900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 02-3215-1400	서울시 종로구 인사 동5길 29 ☎ 02-721-5300
홈페이지	www.koreaap.com	www.nicepni.com	www.bond.co.kr	www.fnpricing.com

나. 주요 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종류 집합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등은 아래의 투자자 총회의 소집절차를 준용합니다. 다만, 종류집합투자자총회의 운용비용은 그 종류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는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소집됩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 집합투자기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투자자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 총 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 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 신탁업자의 변경 (단,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
-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및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5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3.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4.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 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 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 이 상품의 집합투자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이 상품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신영자산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www.syfund.co.kr)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http://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아래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공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이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구에 관한 사항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의 환매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1)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2015년1월1일 이후).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1)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판매회사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

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결산서류는 1.대차대조표, 2.손익계산서, 3.자산운용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임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

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4)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계약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syfund.co.kr)·판매회

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법 제87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분	내용
<증권거래>	1) 선정을 위한 기본원칙 -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 대비 수익 - 거래유형별 매매체결 능력의 우수성 - 투자중개업자의 재무상황 및 자금결재의 위험성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2) 선정방법 -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는 운용역 및 매매담당자 등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각 구성원이 중개회사별로 10점 만점을 원칙으로 매월 평가하여 20개 이하로 선정 3) 평가항목 - 자료 및 정보의 질, 펀드 성과 기여도, 세미나 개최 및 기업탐방 주선 등의 조사분석서비스의 유용성과 주문집행의 정확성, 체결단가의 적합성, 정보사항의 신속성, 투자중개업자의 재무상태 및 자금 결재의 안정성 및 업무 담당자의 역량 등 주문집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장내파생상품거래>	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략, 특성 및 상기 선정을 위한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별도의 평가 없이 자산운용본부장이 결정하여 거래할 수 있음

(주 1) 매매대가 이익 :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펀드)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투자신탁, 투자회사, 뮤추얼펀드, 투자기구 등으로도 불리우나, "펀드"라는 용어로 가장 널리 불리웁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 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주식형집합투자기구	일반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채권형집합투자기구	일반적으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펀드로서 통상 집합투자재산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식혼합/채권혼합형 집합투자기구	일반적으로 주식과 채권에 모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로서, 주식에 최대 50%이상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주식혼합형, 주식에 최대투자 가능비율이 50% 미만인 펀드를 채권혼합형이라고 말합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특정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하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금리스왑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성과보수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사전에 투자설명서와 집합투자계약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실물자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 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위험평가액	법 시행규칙 제4-54조(위험평가액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위험평가액을 말합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설정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간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